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세채 의원 외 12명

2. 제안이유

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추진

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합리적
으로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를 도모

3.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준치기간 신설(안 제18조의3)

나.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내용 등 조문 정비(안 제21조의2)

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정(안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 녹지지역의 입목축적도 허가기준 완화 및 경사도 허가기준 표기 수정

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화 신설(안 제29조제2항)

-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의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마.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완화(안 별표20)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농기계수리시설 입지 가능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주택법」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 기 타 : 조례안 예고(2022. 11. 18. ~ 11. 23.)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정 등을 개정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상위법과의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녹지지역의 입목축적¹⁾의 허가 기준을 기존 75%에서 100%로, 토지의 경사도 허가 기준을 기존 45%에서 25도로 변경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었던 부분을 일부 완화하여 토지활용성을 증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1) 입목축적 : 시군구별로 평균보다 우량한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준(일정한 면적에서 서 있는 나무의 부피의 합)